

전주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248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학수, 이창현, 한지영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9. 8.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9. 8. 21. 접수 제20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10. 2. 원고의 보증 하에 2015. 10. 6. C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

나. B이 2020. 1. 3.경 위 대출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C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고 2020. 2. 26.경 C은행에게 68,919,490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B은 2019.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달 2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B은 2020. 2. 3. 전주지방법원 2020개회138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20. 6. 4. 위 법원은 B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B은 2020. 8. 28.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나 전주지방법원 2020라450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2021. 2. 23.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취소결정을 받았고, 2021. 3. 31.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을 포함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71,975,721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20. 6.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1. 3. 3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20. 9. 24.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수계하거나 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수계 또는 중단 요건을 갖추려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은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은 수계 또는 중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북도 김제시 전 159㎡
2. 전라북도 김제시 대 354㎡, 끝.

